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8
----------	-----

제출연월일 : 2000.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 이유

- 폐기물관리법이 '99.8.9일자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을 개정 법률에 따라 정비코자 함

주요 골자

- 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완함 (안 제2조 제3호)
-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개정함 (안 제6조)
- 다. 신축되는 100세대당 공동주택 감량기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와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2항)
- 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개정 (안 제12조2항·3항)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제3호라목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사항

○ 입법예고예정 : 2000. 3. 3 ~ 2000. 3. 22.(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기타 참고사항

○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준칙개정 (폐관67510-414('99.11.24))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로 하고, 동조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 4제5호의 가목” 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 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중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을 “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로 한다.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호중 “감량화 또는 자원화” 를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3호, 법제15조제1항” 을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3호” 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를 신설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중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63조제2항제2호” 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 을 “법 제12조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중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 을 “자원화하는 시설” 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p> <p>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4. ~ 5.(생략)</p> <p>6.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이라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 (정의)</p> <p>1. <u>농·수·축산물류 쓰레기의</u></p> <p>2.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u></p> <p>3.“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p> <p>4. ~ 5.(현행과 같음)</p> <p>6. <u>사료·퇴비·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u></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p> <p>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4조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p> <p>1. <u>자원화 또는 적정처리</u></p>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p>	<p>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p>
<p>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p>	<p>-----</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동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신설></p>	<p>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p>	<p>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책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p> <p>①-----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p> <p>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적정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p>	<p>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개시 1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원화와 관련된 기술·인력을 갖춘 민간업체등에 위탁운영토록 할 수 있다.</p>	<p>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자원화하는 시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 ① ~ ② (생략)</p>	<p>제15조 ① ~ 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호(폐기물의 처리기준)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